

10 정신건강토달케어서비스(090109) / 시·군 공동서비스

항목	내 용										
목적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일상생활 관리, 정신적 신체적 건강관리, 가족 돌봄 지원을 통해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지역 (9개시군)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군포
	X	X	○	○	X	X	X	○	X	X	X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과천	
	X	X	○	X	X	○	X	○	X	X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X	X	○	○	X	X	X	X	X	
이용대상 (소득·연령· 육구·중복 기준 모두 충족)	소 득 기 준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연 령 기 준	만 19세 이상									
	육 구 기 준	〈①~③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제출한 자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인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에 따라 정신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질환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F31), 조현병(F20), 조현정동장애(F25), 재발성 우울장애(F33), 강박장애(F42),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F06~F09), 투렛장애(F95.2), 기면증(G47.4) 중 1개 이상의 진단명(질병코드)를 포함한 경우에 해당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한 자 *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 ※ 정신과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서비스 신청 불가. 단, 정신재활시설 입소자는 시설의 종류 및 사업, 이용시간에 따라 일부 이용 가능(별지 참조) * [별지]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 서비스 이용 가능여부 확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기간 동안 서비스 제외									
	우 선 순 위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한 대상자(30% 이내)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한 대상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 ② 등록장애인 ③ 지자체 추천(연계) 대상자(※ 지자체 추천(연계) 대상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음)									
	중 복 제 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前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기준	제 공 기 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 공 인 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이상 채용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분기별 1회이상 슈퍼비전 등 교육지도 필수									

60

항목	내 용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증상이나 기능 등에 대한 사전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계획 수립 (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개인별 증상이나 기능의 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 3단계 : 이용자의 증상, 기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성과를 측정함 (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반드시 아래의 검사도구 중 1개 이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해야 함(필수) BPRS(간이정신상태평정척도), GAF(전반적기능평가) ※ 필요시 기관의 재량으로 아래의 검사도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음 MCAS(지역사회적응척도), BAI(정서상태검사), RAS(회복평가척도), 행복감척도, CSI-K(한국어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척도)
안전관리 기준	▷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제시 - (기관비치 양식 또는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유의사항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재가방문형, 혼합형(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② 결제시기 : 실시간결제(회당 결제) ③ 효과성 검증 : 사전·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 ③, ④ 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내 서비스 효과성 측정 시스템을 활용

별지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관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0)

종류		사업	정신건강토달케어서비스 신청 가능여부
1. 생활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등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불가
2. 재활 훈련시설	가. 주간 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에게 작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 적응 훈련,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가능
	나. 공동 생활가정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가능
	다. 지역 사회전환시설	지역 내 정신질환자등에게 일시보호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 적응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불가
	라. 직업 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적응, 직무기능 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 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가능
	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정신질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가능
3.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또는 게임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 질환자 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일부 가능 (24시간 입소자 불가)
4.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가능
5. 종합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신재활시설 중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등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일부 가능 (※ 2개의 이용시설 중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24시간 중독자재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비스 신청 불가)